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9일(수)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24. 현안질의

25. 중인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25. 중인 출석요구의 건 | 4 |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6 |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 |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 |
|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 |
|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 20 |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 20 |
|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 21 |
|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 21 |
|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 21 |
|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 21 |
|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 21 |
| 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 21 |
|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 21 |
|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21 |
|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
| 1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
| 1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 33 |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 33 |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
|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 33 |
| 2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34 |
| 23.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 34 |
| 24. 현안질의 | 43 |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출석을 법사위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불출석사유서인데요. 이 불출석사유서는 국회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요.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8조, 수사상·재판상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서울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어떤 것은 시간으로, 어떤 것은 날로 뒤죽박죽 해 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의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므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뭐라고 돼 있느냐?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

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석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의 장이. 따라서 이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회를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거나 눈감아 버리거나 이것은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명태균 씨는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나면 나서 가지고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지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법사위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또다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아마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3분 내로 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회에 증인 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십 년 전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데도 국정조사 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 이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

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후보들의 관계…… 더욱 분노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한 탄원서 같은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염연한 선거법 위반이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밝힙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든 증언을 할 생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또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윤석열 정권은 한 달 안에 망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과 무슨 연관성은 없는지, 혹시 명태균이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던 트리거는 아니었는지, 또한 명태균 씨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인편을 통해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명태균 씨 말과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장외, 언론을 통한 공방전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국회의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표결하세요. 길게 할 것 없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뻔히 알면서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저는 그냥 침묵으로 계시면, 침묵 반대면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꼭 표결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2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소관 기관장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및 검찰총장도 다음 주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외통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가하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정책으로 추가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고, 법무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 실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검토 결과에 관련하여 부칙 제2조는 기존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개정 규정의 동포교류진흥원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는데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명칭, 물적 요건, 인적 요건 및 기존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상세하게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보다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박지원 위원 이번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미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점이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나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원자력의 기술 유출 문제다, 산업스파이 관계인데, 동맹국가 간에 산업스파이가 존재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부 부주의라든가 일탈행위 같은 것은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겠지요.

○박지원 위원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산업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학 연설, 김용현 국방장관, 신원식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원자력 문제의 기술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외교부, 대통령, 외교안보실, 국정원의 책임이 크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그렇다…….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도 이재명 대표가 프로 차이나(pro-China)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무장론 문제는 어제 조셉 윤 대사대리도 부인했고요.

○박지원 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산업스파이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라든지 산업스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글쎄, 기술 보안 유지 문제라고 하고 주한미국 조셉 윤 대사도 본국이나 주재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한 말씀으로 압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민감국

가 지정을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무모한 얘기를 하는데도 담당 장관이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안보가 지탱되고 있는데, 한미 군사동맹을 끁 다음에 핵무장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잠재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무모한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서 그러한 것을 지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추정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 말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조금 죄송한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그러면 3분 안에 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뭘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합니까?

알았어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보통 우리가 핵무기 그러면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잘 모르시겠어요?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핵물질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조사받고 제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전에 딱 한 번 그런.....

○**위원장 정청래** 한 번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우리 NPT 가입 국가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NPT를 탈퇴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물질 재처리 과정을 한미 원자력협정 규정에 위반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농축은 기존 협정 체제 내에서도 할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 네 가지를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핵물질을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반해서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생산해 내거나 그러면 바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면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싫어 할까요? 우려를 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핵 확장 억제 강화가 공식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보면 반미 인사들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요.

미국이 이번에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산업부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장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원자로 기술 유출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를 들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미 측이 해명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발표……

○박은정 위원 지금 외교부 두 달 동안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원인도 제

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안 사안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민감국가 지정이 됐는데 두 달 동안……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것을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두 달 동안 외교부가 모르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내부 관리 비밀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은정 위원** 어쨌든 저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 기술 유출이, 저 배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 때문에 민감국가가 지정되지, 안 그러면 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예전에 통상 할 때도 미국이 불공정 무역 국가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공정 무역 국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박은정 위원** 민감국가가 뭡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특정한 관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나라 법에 그렇게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민감국가를 설명드릴게요. 외교부장관님이 잘 아실 텐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이 설명하십니까?

○**박은정 위원** 보십시오.

민감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의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순한 문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아니고요. 미 에너지부의 리스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민감 또는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핵 비확산 국가로 분류가 되어야 이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민감 그것은 비확산이 아니고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리스트 2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3년 4월 김태호 안보실장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한다’, ‘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당 대표 시절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 막을 최선의 방도는 핵이다’. 2024년 6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한목소리로 독자 핵무장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나경원 의원까지 올 1월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국회에 나와서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니다’ 이런 발언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플랜 B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론적 답변 과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국내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들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12·3 내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민감국가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다고 미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4월 15일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외교부에서 이 지정을 철회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대한 노력을 합쳐 범정부적으로……

○**박은정 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노력을 할 뿐입니다. 미국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답게 말을 좀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여태 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정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80년대하고 90년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배숙 위원** 사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정이 됐느냐? 지금은 팩트 체크가 돼서 그런 해명이 나왔지만 그 전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 또 ‘핵무장론

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랬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북한은 핵을 상당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략무기 체계에 있어서 엄청난 비대칭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또 지금 대통령 지도력 부재 상황에서, 직접 김정은과 소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우리도 지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렇듯이 저는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핵을 하겠다, 핵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치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틀렸다고 보고 또 팩트 체크해서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이것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라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이것을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왕 알았으니 이 부분을 좀 빨리 제대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능성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간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재외동포청장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도 두 가지 점에서 법무부하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예.

○장동혁 위원 사실은 지금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재외동포청입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재외동포청이 생긴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재외동포청에서 총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업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중복이 발생되는 부분은, 부처 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정해 놓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포청 입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예.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재외동포기본법은 전 부처에 적용되는 재외동포에 관한 포괄적 법률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소관 법률하고는 충돌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의 국내 체류 동포 업무는 체류자격, 즉 사증이나 국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업무는 귀환동포의 안정적 정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미 그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도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처에 관련돼서 적용하는 것을 재외동포청에서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있어요.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저희들이 모든 부처를 다 포괄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장동혁 위원** 지원정책은 어쨌든 재외동포청에서 총괄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재외동포기본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재외동포기본법 6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해서 관계부처의 소관 법률하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국외 거주로 한정하자고 하는 것도 그 조항에 따라서 특별히 충돌할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6조에 따라서?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재외동포법기본법 자체가 국내동포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적어도 법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뭔지 확인을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장동혁 위원님, 법무부에서 반대를 해 와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계류를 시켜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법무부 반대는 이겁니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기존 국내 거주 재외동포 관련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 정책과 중복이 우려되며 보조금 지급은 국외 거주 재외동포 지원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 이견이나 부처의 반대가 있을 때는 그것이 해소되고 통과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저도 이 4호 안건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논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관련된 그동안 여러 가지 법무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또 재외동포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제대로 정립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합리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호 안건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원을 하

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송석준 위원 최근에 북한이 남북 국경 부근에 장벽도 쌓고 또 여러 가지 대남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와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탈북인들의 추이랄까요, 그런 내용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투입돼 있는데 아마 거기에 포로로 잡힌 병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망명을 오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탈북민은 2023년에 한국으로 196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는 236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탈북민들은 제삼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분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탈북민 숫자는 크게 늘지는 않지만은 완만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있는 북한군 중에 포로로 잡힌 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관계 국가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통일부로서는 그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수용하고 또 정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두 분 정도가 많이 알려졌는데 혹시 이런 포로 병사들의 숫자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답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생포되어 있고, 그분들이 한국으로 오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되면 현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밝혀 놓은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분들 말고도 추가로 더 그런 병사들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파악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외교부장관님, 민감국가 지정이 되고 보도가 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다 또는 핵무장론 때문에 이와 같은 민감국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서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여론전을 펼치기 전에 혹시 외교부에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어떤 질의나 확인되는 작업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민감국가 지정이 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무슨 계엄이니 이런 핵무장론이니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외교부장관으로서 국가 외교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확인 작업조차 없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

편하시고 답답하신 심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어여세요, 그런 상황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정확한, 미 측으로부터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유상범 위원** 한 이틀 정도 길어지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틀이 아니라 더.....

○**유상범 위원** 더 길어졌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더 오랫동안..... 에너지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계속 시일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늦게 밝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가 전통적으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다 또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국내에서의 갈등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유상범 위원** 저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보기론 어떻게 보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민감국가 지정이 분명히 연구소에서의 자료 유출 문제라는 것을 미국에서도 명확히 밝혔고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무부랑 NSC에서도 에너지부와 바로 접촉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이 국무부하고 백악관 NSC를 접촉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것까지는 아는데요,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듣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수행을 했고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NSC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일각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외교부가 뒤늦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언론 보도가 나기 며칠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며칠 후에 저희들이 밝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고 국민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압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감국가라고 지정이 되니까 국민들도 이러다가 미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맞지요?

외교부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렵잖아요.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다가 들어 보도 못 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판단으로 나오고 검찰은 즉시 항고 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 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이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이거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서영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제가 만나서…… 외교 현장에서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민감국가라고 우리가 뭘 압니까? 민감국가라고 지정되었으면 일찍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비밀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데는…… 바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오랫동안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자기들이 검토하는 사이클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감국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들도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외통부장관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뭐 하고 안보라인은 뭐 하고 에너지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구멍 난 거잖아요. 이것 하는 시간에 비상계엄이나 고민하고 있게 하고, 사실 이걸 가지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여당이 자랑할 일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스웨덴에서 한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단계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 단계로 한 단계 하락시켰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모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려는데 자유민주주의 단계에서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한 단계가 하락돼서 독재국가에 가깝게 됐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가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가 자꾸 거부권을 날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외통부장관께서 좀 파악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좀 해 주셔야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정부·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잘 견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행정부가 계엄까지 선포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잡아 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엄까지 더 포함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 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어려운 시기 맞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잘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서영교 위원 잘하지 못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내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열심히 잘해서 이런 문제 생기지 않고 외교적으로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뒷 얘기는 달지 않으셔도 돼요. 정치권이 잘해야지요. 특히 대통령이 잘 해야 돼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여당이 잘해야 해요.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표 위원 민감국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인원이 갈 때 방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래서 지금 주한대사대리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너무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것 같다고 어제 걱정스러운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압니다.

○김기표 위원 통제불능 상태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자기가 보기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걸 해석할 수는 없고……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절차를 며칠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AI라든지 양자과학 이런 데의 협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것 없다고 에너지부 측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걸 확인했으면 호들갑 떨 일이 아니지.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 제가 이해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장관을 만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건 만나게 돼 있었던 것인지 이것 때문에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별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협의하기 위해서 예정된 방미인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교부장관님 말씀은 이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엄중하게 보고……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데 어떻게 가벼운 걸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엄중하게 보고 있으니까 장관도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볍게 보고서 이 일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가벼운 일은 아니지요, 당연히. 가벼운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면 지금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보안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보안의 일탈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지는 않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김기표 위원 그게 한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뭔가 조치가 필요할 때 쓰는 말이 센서티브(sensitive)라는 법률용 어고요.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물론……

○김기표 위원 그 이유는 파악해 보셨나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굳이 한국을 딱 집어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지……

○김기표 위원 어떤 사례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사례를 특정 사례라고 지적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미국은 분명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뭔가 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보안 사고가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모든 것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함한 게 뭐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 사례인지는 말해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김기표 위원 어찌 됐든 개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탈이 아니고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김기표 위원 보안 사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특정 연구소의 어떤 보안에 관련된 문제다 했지 어찌어찌한 연구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보안 규정 위반의 사안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한국에 대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뭔가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돼 있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단순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규정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민감국가라는 것을 지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김기표 위원 아니, 그건 상식 아닙니까? 개인적인 아무…… 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라고는, 감찰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정부라는 말은 있지만 그게 정부가 관여돼 있다라는 말로……

○김기표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 물론 명목은 보안 사고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핵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돼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협의 과정에서……

○김기표 위원 그게 어떤 명목상의 이유만 들어 가지고 민감국가로 지정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협의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 기저에 빙산의 일각처럼, 내부에 있는 빙산의 아주 큰 부분처럼 미국에서 생각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님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저는 미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 한국 여행객이 우발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강도행위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그 자체로 강도국가로 설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뒤에 무슨 정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종합돼서 민감국가로 설립한 것이 아니냐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했으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정청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익 추구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평소에 하셨는데 그 말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최전선에 뛰는 만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위원들의 당부로 아시고 너무 위축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할 일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그냥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님, 김영호 장관님, 이상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1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1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문체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에서도 개발계획부지 내에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직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소속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 또는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 미신고 시 직권발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등급분류기관의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부칙 규정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치유관광을 치유관광 지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치유관광 육성 기본계획 및 시범 시행계획과 관련된 자료 요청 대상과 협조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치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자 등이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최웅천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잠깐 제가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8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문구로 수

정하여도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청장님 입장은 어때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 의견 청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도하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협의로 두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요. 협의를 해서도 물론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청취라는 것은 너무 좀 약한 듯한…… 그 조항에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협의’라는 단어와, 그냥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협의라는 것이 합의는 아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냥 협의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의 반대가 좀 있긴 한데……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냥 협의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장관님, 9번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거는 행안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아주 강한 반대보다는 의견을 좀 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까? 개별 법률에서 소속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이거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그렇게 낸 것 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를 오늘 그냥 통과를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걸로 이 부분을 알고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세요,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제가 8항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시길 했는데요.

국가유산청장님, 지금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는 특별한 반대는 없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 오히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거기가 해당이 더 많은데 거기는 얘기가 없는데 서울시만……

○**장동혁 위원** 오히려 다른 지자체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또 예외가 되기 때문에 협의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다만 유산청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협의로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안번호 9항 관련해 가지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한 게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2012년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국립한글박물관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글박물관도 13년도나 그 정도쯤 개관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넘게 운영을 잘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없으면, 개정이 안 되면 뭐가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이 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역사박물관하고 한글박물관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역사박물관도 저희가 산업박물관, 민주화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으로 이제 분관을 할 거거든요. 또 한글박물관도 역시 다른 지역으로 분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법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곽규택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나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한 지 10년 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이 돼 왔고 이런 법 개정 없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분관 설립 같은 것 통해서 당연히 인원도 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개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가 기관을 그런 식으로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관 법마다가 기관 설립에 관한 근거를 두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인원 늘려 달라, 예산 늘려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행안부에서 단순히 작은 우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이게 소속기관이니까 굳이 법에 안 넣어도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박물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2개만 빠져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분관을 해서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은 가능하면 ‘국립’이 붙어 있는 기관들을 지역에 더 많이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중앙, 국립—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법인화시켜서 일종의 ‘국립’은 붙어 있지만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 그래서 공무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심한 반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곽규택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분관이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두 박물관의 지방 박물관 설치 근거가 분관과 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최응천 청장님,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 8호 안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좀 잘 조율해서 서로가 어쨌든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혹시 안성에 있는, 죽산에 있는 죽주산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들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죽주산성이 항몽 유적지로서 또 최근에는 6·25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유적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현장을 보면 제때제때 관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서 유적지가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수해가 와서 많이 피해가 따라서 신속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문화재로 관리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원처럼, 문화유적지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 공간인데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지자체하고 적극 협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새 사적지뿐이 아니고요 사적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그런 활용 사업의 차원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저희가 전에 한번 발굴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발견이 되면 같이 묶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가,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발굴 작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현장에 그런 여러 가지 수목이 우거져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라든가 또는 수해로 훼손된 부분을 조속히 복원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특히 거기에 송문주 장군 사당이 있지요? 그분이 고려시대 때 몽고군을 격퇴한 분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분 사당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요 유족과 그 주변, 역사적인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현장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지금 여기 국립한글박물관이랑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설립을 했으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근거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안에.....

○유상범 위원 정부조직법 내 대통령령 산하의 직제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 직제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문체부 직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정부조직법하에서 문체부 산하의 기구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유상범 위원 규정이 돼 있으면 굳이 이걸 법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제가 근거도 없는 것이고 이 법을 규정해서 정부조직법상 직제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게 또 언뜻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령 산하의 직제에서 두 가지 그 기관에 대해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것을 법에 올려 가지고 규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물론 저희들도 지금 소속기관 그 역할로도 충분히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외의 미술관이라든지 중앙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나 이 법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만 빠져 있어서.....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여기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은 방금 장관님이 지적하신 중앙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모든 박물관을 거기다 기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 제가 봐서는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에 넣지 않고 직제에 넣어서 추가로 기구가 생기면 대통령령 직제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정부 조직 전체에 대한 기구의 운영의 주체는 엄연히 행안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형식의 규정이 되면 사실은 대통령령에 의미 없는 일종의 법률 문언의 추가에 불과하거든요, 단어 추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법인화 문제는 이미 다른 항공박물관이나 농업박물관 같은 거는 법인으로 돼 있지 부속기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다른 박물관이 법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등재해야 된다 이런 법률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똑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이나 한글박물관, 역사박물관 자체도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박

물관인데요. 결국은 법인화 문제는 독립된 본관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국립이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은 하되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법인화하려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걸로 하면 기재부나 행안부가 이건 혀락이 안 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맡겨서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장관님 말씀은 그러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이런 부분에 문체부가 지금 의도하는 사업, 분관화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의가 안 되는 것을 법률로 우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방금 설명은 그러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분관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가 다 어쨌든 이 법 안에 들어와 있는데 두 군데만 지금 빠뜨려 놓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빠진 것이 무슨 정부조직법의 직제에 빠져 가지고 법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직제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박물관 두 개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법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필요성은 결국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분관을 할 때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해서 법률로 만들어 놓아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이 법에 안 해도 그것 가능은 합니다. 분관하는 건 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형태는 국가에서 다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하고는……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법의 어떤 보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 다른 직제와 형평성에 맞게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게, 모든 조직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의 입법으로서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되면 전체 국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도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직제가 다 이미 마련돼서 대통령령으로 관리가 되는데 굳이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만 된다, 다른 이름, 다른 박물관은 있는데 이 두 개가 빠졌으니 넣어야 된다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법을 왜 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도 사실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 글쎄, 그 규정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는 거지요, 이쪽 주장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지요, 문체부의 그 얘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소속기관 형태로도 가능한데 이런 의견도 있다,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거지요.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간사님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문화부장관님, 3월 6일 날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평소 장관님 소신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의 한 1년 준비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북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확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북 전주가 또 강조하는 게 문화 올림픽,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 맞춰서 문체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문화한국 2035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체부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성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세부 계획은 좀 수립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이제 시작이라서요. 지금 거기는 예비타당성검사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났어요. 원래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기재부의 승인받는 것까지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야 그런 세부적인 아마 의논을 할 겁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장관님 소신인 만큼 어느 정부인지 상관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핵심 과제 6개 중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여기서 보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 열세 곳을 선정했는데 선도 모델로 전주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성윤 위원 이 내용이 2027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계획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자자체에서 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컨설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 지역구인 전주를 문화도시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때 맞춰서 마침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고 또 2036년 굉장히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문화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확정되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아직 본게임이 남아 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유인촌 장관님, 그냥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유병채 국장, 국민소통실장이지요. 이분을 지금 국악원장으로 그렇게 발령을 내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이고요. 일단 국악원장 자리는 대통령 결재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그 과정을.....

○박범계 위원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적당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나름대로 그 과정을 공정하게 다 거쳐서 되면 되겠지요.

○박범계 위원 적당한 사람입니까, 장관님? 이분이 국립국악원장으로서의 전문가라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개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요, 유병채 이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는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 사람인데.....

○박범계 위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범계 위원 이게 작년 국감 때부터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문제는.....

○박범계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유병채 이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KTV 기억나시지요? 황제 관람 논란 그 일환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는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악 관련한 학회, 5개 학회의 대표 다섯 분이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국립국악원장에 필요한.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인데 이렇게 문체부의 행정을 전담했던 공무원을 여기에 발령 내는 것, 낸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 있고요. 충분히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이분들, 국악 학회 대표분들이 성명 낸 것에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국악원은 저희들이 현재 네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고 진도에 있고 부산, 남원에 있고. 앞

으로 만들어질 테가 서산이 있고 강릉이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 충청북도 해서 도마다 다 만들……

○박범계 위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이 커진다는 거지요.

○박범계 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지금 내란사태를 진압하는 데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공감하다시피 관련 학회장들이 얘기를 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씀 주신 거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장관님 뵙기가 힘드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6항과 관련해서, 관광취약계층에 관한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개정안 내용이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합당하게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예산 확보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장애가 없으려면, 장애인이 관광을 하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도 개선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저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이 어느 나라 콘텐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우리가 제작하고 다 만들기는 하지만 그건 넷플릭스에서 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우수하고 질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익은 거의 투자한 자본 거기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배급망이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문화자본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토종 OTT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이 좁으니까, 국내에 있는 OTT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거나 기타 그런 정도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펀딩도 조성을 해야 되고, 물론 마중물처럼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마다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창작자들이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어떤 부분은 IP를 다 넘기고 큰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러닝 캐런티라고 해서 적은 돈을 받고 이후에 수익에 대한 거를 나누는 그런 계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종사자들마다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장이 다 달라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확실하게 IP를 확보하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배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입니다.

장관님께서 아마 남원에 대해서 춘향제나 이렇게 등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이 천년고도인데 남원성이 사각성으로서 과거에 해자까지 있었던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성인데 아직도 복원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의 북문성이 정유재란 때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 일본이 일제시대에 성을 다 뜯어 버리고 거기다 철로를 놨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만인의총이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문성 중심으로 성곽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딥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십 년 걸렸는데 겨우 지금 성곽 조금 이어지고 북문성조차도 복원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죽어서도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남원 같은 데는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땅만 파면 뭐 기왓장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공사가 중단되고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성곽 보존이 요새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주여건도 개선을 시켜 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발굴은 선 발굴 다음에 복원이 되다 보니까 발굴하다가 생각보다 예상치 않은 유적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또 지체되고 하는데, 저희는 남원성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갔었고요. 이런 상황을, 걱정 안 되시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인원을 확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도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성 하나 가지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모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남원성 전투에서는 정말 명나라 군사도 와서 삼사천 명이 죽었고 일본군들도 정유재란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성을 복원한다면 정말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대단한 관광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문화재 관리의 원칙이 원형 보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장 정청래**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 절반 이상, 지방 문화재는 육칠풍 % 이상

이 불교 사찰 문화재인데요. 제가 절을 많이 다닙니다. 가서 보니까 법주사를 갔더니 쌍사자 석등이라고 국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서 손으로 만져도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페인트라도 묻히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런 적이 있고요.

또 화엄사를 갔더니 각황전이, 그 건물 자체가 국보지 않습니까? 막 그물을 쳐 넋어요, 새그물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둘기가 와서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둘기 쫓아도 또 교묘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원형 보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각황전 앞의 석등도 국보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처리 중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사사자 석탑 그것도,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잘 되던데.

그래서 제가 절에 갈 때마다 국보나 지방 문화재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문화재 관람료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것도 방안을 한번 해 보자고 스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많이 듣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람객이나 대중으로부터 직접 노출이 돼 가지고 손상 우려가 있는 문화재 실태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갔더니 팔만대장경 자체는 보존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전각도 국보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것도 누가 가다가 커터칼 같은 걸로 속 한번 긁으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지금 국보나 문화재, 보물들이 어느 정도 실태인가 이런 걸 조사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국보·보물은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라든가 안전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엄사 앞에 있는 국보 석등도 균열 현상이 발생돼서 저희가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에 옮겨서 보존 처리가 올해 안으로 다 끝납니다.

이처럼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 주신 덕분에 사실은 사찰 관람객이 많게는 한 18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찰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안, 안전, 관리 인력이라든가 또 CCTV

보강이라든가 야간의 그런 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저희가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관찰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스님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180%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2배 늘었다, 3배 늘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관리 인원은 또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잘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박지원 위원 10초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박지원 위원 유 장관,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지원 위원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청산도 곧 간다고 했지요? 빨리 해결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꼭 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지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시 후에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10항부터 1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2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23.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15시30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곽규택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님. 싸울 것이라면서 뭐……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준·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상 밀수입 예비행위와 본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을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의 미수범 및 예비죄를 범한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일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 대상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회사명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송석준의 날이군요. 아주 좋은 법안을 두 개를 이렇게 잘 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청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게 위헌 판결이 난 거였지요?

○송석준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송석준·박준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경우가 있지요, 실제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벌을, 공포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럴 때 송석준 위원님이 먼저 손 들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안을 이렇게 소위에서 잘 통과시켜 주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회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토론을 좀 하고 싶은 안건은 22호 안건, 23호 안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그리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입니다.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과잉 시대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와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를 통해서 각종 특검법 그리고 또 탄핵안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국민들이 무슨 탄핵병에 걸렸느냐, 특검병에 걸렸느냐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 시대를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법무부장관도 계시고 대법원 행정처장도 계시지만 정치인은 정치의 영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 법안들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산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히 특검법안이라는 것은, 특검이라는 것은 우리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정치가 개입을 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또 검사를 우리가 공정하게 선임을 해서 하는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완전히 내용 자체가 야당의 일방

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또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또 이렇게 기간도 늘어지고 또 예산도 들이고. 이러한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이 안건에 대해서도, 22호 안건, 23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싶고요.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예요. 이게 그동안에 네 건 부결됐던, 재의 요구까지 됐던 김건희 특검법하고 똑같아요. 채 상병 특검법 3차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제발 정치 과정에서 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정치의 영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의 영역에 충실하고 행정부가 할 것은 행정부에게 제대로 맡기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혹시 법무부장관대행님 한번 입장과 대법원 행정처장님도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수사요구안은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상설특별검사라는 제도도 기존에 행정부가 해 왔던 수사와 소추 업무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행정처장님도 한 말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소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래도 2년 동안 스물세 개는 하지는 않지. 이건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는 쪽쪽 하나라도 이것 공포한 적이 있느냐,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논리가 다 있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전에 1소위 하면서 차관께 짚었던 대목인데 소위니까, 전체회의 여당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관을 통과해서 문제가 됐던 전체 마약량이 얼마입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요구안에는 74kg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7kg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술에 근거한 kg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진술에 근거한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본질이 아니고 100kg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3400억쯤 된다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통관이라고 할 때는, 국경을 넘어올 때는 입국심사와 그다음에 세관심사를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검거된 마약 조직책의 말에 의하면 이 건은 별개 통로로 안내를 받아서 왔다. 하긴 그렇지 않으면 그 세관검사대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별개의 통로로 안내를 받아서 왔다, 이 지점은 듣고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게 23년 2월 달부터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백해룡 경정이 이걸 적발해 낸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에? 이 마약의 전부가 다 수거된 것도 아니잖아요. 압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다 대한민국 전체에 유통돼 가지고 지금 맞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운을 걸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2023년 11월까지의 수사 경위만 나와 있지 그 이후의 수사 경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수사의, 마약 밀수와 여기에 대한 외압 사건의 본질은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백해룡 경정이 수사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백해룡 경정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파출소에 전보가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좌천돼 있지요. 경찰서장인 김찬수 총경은 어디 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용산 대통령실……

○박범계 위원 용산 대통령실에 가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의 외압 혹은 김건희 여사의 외압 이런 등등의 루머가,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검찰은 뭐 했습니까? 오전의 질의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법 통제 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 수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대미문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뭘 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도 2월경에 세관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고 실제로 3명을 구속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관이 무조건 밀수사범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봐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점은 그래서 영등포경찰서가 일단 세관 직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 인원을 현재 입건한 상태고 검찰에서는 계좌나 압수통신영장을 41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다섯 번을 빼고는 다 발부를 한 상태기 때문에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면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범계 위원**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것을 강변하고 검찰의 역할을 강조 할 수 있는 국면이에요, 이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이 사건은……

○**박범계 위원** 검찰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세관 공무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강제수사 영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발부를 해 줬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영등포경찰서가 입건한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 사건이 송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건이 송치가 되거나 혹시 불송치된다고 하면 기록 검토를 통해서……

○**박범계 위원** 검찰에 독자적인 수사팀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곽규택 위원**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개별 특검법안이 총 몇 건 발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곽규택 위원** 24건 발의됐고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번에 두 가지 포함하면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번까지 아홉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지금 30건을 훌쩍 넘는 특검 과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법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회에서 4명 추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또 변호사협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지금 야당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회 규정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는 조화롭게 공정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을 독차지하겠다 결국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이 이게 야당이 지명한 검사냐 이런 지금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뿐만 아니고 법원에서도 다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7명의 추천위원이 골고루 분포되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 내의 운영규칙을 바꿔 가지고 야당이 독점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의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 요구는, 아예 또 들어왔으면 그 당시에 법의 제정에도 관여했고 또 특별검사의 추천위원회에도 관여하게 돼 있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원만한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서 좋은 법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 주신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이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들도 유념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6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만의 독자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이 지명하는 검사를 특별검사로 하겠다 하는 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요구안은 당연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쯤 하시고요.

어차피 뒤에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이것 포함해서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비슷하게 했거든요, 토론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거 어떡하시려고, 현안질의 하고 표결하려고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것 통과시키고 현안질의 할 거니까 현안질의 때 포함해서 이것 다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 일단 우리가 소위에서도 얘기했고 표결에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그러면 합의된 것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토론할 사람 있어요.

○**유상범 위원** 토론할 사람 여기 있어요. 조배숙 위원님 하신다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따 하시면 안 되겠어요? 현안질의 때 어차피 포함해서 다 할 거니까.

○**조배숙 위원** 현안질의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 내용 포함해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 송석준 의원님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먼저.

○**유상범 위원** 3분인데 조배숙 위원님, 하시라고 그리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하시겠어요?

○**조배숙 위원** 예, 3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세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 명 더 해 주시지요. 아까부터 손을 열 번 더 들었는데……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조배숙·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의결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아까 인천 세관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세관 직원 총 7명을 입건했고 몇 명이 구속됐다 그랬나요? 5명이 구속됐다 그랬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구속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건 숫자는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시간이 꽤 됐는데 이렇게 안 나온 것 보면 좀 불분명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조직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세관 직원의 협조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사 범위가 커지니까 시간도 별게 되고, 그래서 혹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실체가 있다면 지금 벌써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특검은 저희들이 잘 알지만 예외성, 보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너무나 과잉 수사가 될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사위에서 계속 청문회도 하고 그랬는데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사 또 삼부토건, 작년에 우리 법사위에

서 회의할 때 계속 다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계속되는 이 수사가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또 여기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2항에 보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윤석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여기서 뭘 조금 특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나 지금……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이 되고.

그리고 또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도 보면 작년에 국감에서 이걸 또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걸로 인해서 있었던 비리는 전혀 발견되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5항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장이 부실 감사했다고 탄핵소추가 됐지만 이게 기각이 됐어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요구안 중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혐의가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된 사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성 여부와 관련돼서 부당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아예 수사에 착수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추상적인, 극히 추상적인 단서만 있는 사안들이 혼재돼 있어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소위 때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특검법 관련해서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지요,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개별 특검으로 해서 총 13개 법안에 14개 특별검사가 시행이 됐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네 종류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발의된 법안……

○서영교 위원 네 종류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발의된 법안은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숫자를 자꾸 세고 싶을 텐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대표발의한 특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고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특검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입니다. 이 네 종류를 윤석열 정부는 계속 거부권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겁니다.

이 모든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거부해 봤자 윤석열·김건희는 수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사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9개 법안에 거부권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내는 법안 39개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5개 그리고 한덕수 총리 6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8건 이렇게, 이번에 하면 9건이지요. 이렇게 39건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는, 특검은 딱 네 가지 종류예요. 모두 다른 민생에 관련한 법안들을 거부권 날렸어요. 여기에 법무부차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상설토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관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주가조작에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 확실하게 김건희 특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토검 만들었으니, 이 상설토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어요.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약이 74kg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다가 차단된 게 100kg입니다. 이걸 밟혀낸 사람이 백해룡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백해룡을 저기 파출소에, 지구대에 가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고 짓눌렀던 경찰서장은 용산에 가서 다 승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도 저희가 표결 참여를 안 했듯이 표결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원장, 법제처장, 공수처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24. 현안질의

(16시11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석방 등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난주에 이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양쪽 간사님들께서 추후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 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주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박범계 위원 7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5분으로 그냥 하시지요. 하고 또 보충질의 하면 되니까요.

5분으로 하고,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감사원장께서 여차저차해서 직무가 정지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저랑도 만나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한 1분가량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여기 앉아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감사원장 최재해 특별히 제가 인사말씀을 준비해 온 건 없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저희 감사원에서 했던 감사 업무들에 대한 그 동안의 표적 감사니 부실 감사니 이런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불식됐다 또는 정리됐다,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 현재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좀 저 나름대로 느꼈고요. 제가 임기가 앞으로 8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최고의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한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감사원장께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우리 법사위에 다시 오신 만큼 그러저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성실하게 감사원장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저는 정말로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박세현 고검장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70년 동안 해 왔던 어떤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무부장관대행께 물어볼 수밖에 없군요.

차관님, 검찰이 결국 기한 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관의 입장은 여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즉시 항고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 고려를 일단 첫 번째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정문에 나와 있다시피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1심 재판부의 의견은……

○**김기표 위원**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더더욱 즉시 항고 해서 결정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수사팀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권에 논란…… 그거는 고려 요소 중 한 가지였다는 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은 본안에서 다툴 생각입니다.

○**김기표 위원**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두 말 하면 너무 길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헌이라는 것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있어서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과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거는 또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역시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못 풀어 주게 하는 거,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풀려난 후에도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결국은 검찰이 석방……

○**김기표 위원** 아니, 일단 풀려났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풀려났고, 그때 저번주 수요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법원행정처장님도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했고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다 풀려난 후예요. 그러면 검찰이나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헌 소지는 없어진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수사팀 입장은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 지휘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남은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통 항고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인

데……

○김기표 위원 아니, 그거는 논지를 흐리는 말씀이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지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이 보통을 할 수 있느냐는 건 논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번주에 얘기가 됐을 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그 논거를 들고 있는 것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수사팀은 석방 지휘를 했고 석방지휘서가 일단 법원에 통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한 부분이라서 석방 지휘하는 그 과정에서 즉시 항고권은 포기했다는 걸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렇다면……

○김기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즉시 항고포기서 냈나요, 법원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원에 낸 건 없습니다만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갔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즉시 항고가 7일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는데 즉시 항고 포기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단은 즉시 항고 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고 그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갔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지 않고, 제가 형사소송법 조문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소나 관련된 것은 서류로서 하도록 돼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했나요? 상소 포기하겠다, 상소하겠다 이거 서류로 법원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서류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가지 않았으면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풀어 줍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석방지휘서를 작성했고……

○김기표 위원 포기할 의사로 풀어 줬다는 건 알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래서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법원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기표 위원 즉시 항고포기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면 그 기간, 아직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즉시 항고가 포기된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와 달리 이제는 즉시 항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아니요. 정확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포기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른 뭐, 꼭 그 얘기가 아니더라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는 검찰에서 종전에도 별도의 어떤 조치 없이 즉시 항고 전후해서 석방 지휘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법원의 판례에 의한 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행께서 본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법적 사항, 재판 사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즉시항고 포기가 법원에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석방 지휘를 사실 임의로 한 것이 됩니다. 정확히 하면 즉시항고 포기를 해서 즉시항고권이 없어지고 석방이 확정적으로 된 후에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검찰이 그거는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즉시항고권이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얘기하는 명분은 그냥 둘러대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질문의 효율성을 위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참조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검찰총장 불출석사유서인데요. 몇 줄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검찰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성이 농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대행과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의 결정이 난 건 구속취소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검찰총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예를 들어요. 그러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가 같은 겁니까, 천대엽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대 때 서기호 의원님 발의한 입법안에서 저희 법원에서는 현재에서 위헌 결정 난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이지만 동일한 논리가 구속취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는 그때 반대했지요,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헌이 난 것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이 났지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장님, 이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맞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이 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에서 위헌 판결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장님, 그 해석 관련해서……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도 구속취소가 결정됐다고 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예를 들면서 구속취소도 명확한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관,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한 30초만 주시면, 이 형식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없지만 실질적 구속취소에 해당한다고 하는 형소법 331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혀가 결정과 실질적 구속취소 결정……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님, 김석우 차관님이 예를 들어 쌍등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비슷하지요. 유전자도 아주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김석우와 김—예를 들면—서우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에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구속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거예요.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오늘 검찰총장도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 지적했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 차관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먼저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이유도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잘 되면 지연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최근에 법조계에서 또 언론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글쎄,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법제처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잘 못 들었는데요.

○박준태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들은 소추 사실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증거로 못 쓰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혐의가 소추 사유의 한 80%가 넘는데요 이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소추 사기애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러면 국회의 소추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보다 각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충실하게 다 갑론을박하면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였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형사재판에서 초시계 놓고 압박하듯이 재판하는 경우도 없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박준태 위원 오늘 헌법재판소 출석은 안 했지만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차관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

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 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 붙여 갖고 다니면서 권한대행은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체포 요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왜 말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박준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 지난달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최상목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니까 체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한 후에 48시간 안에 구치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면 불구속기소해 주고 안 하면 구속기소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이것 또 제가 늘 하던 거지만 팩트가 잘못돼서 국민들에게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정에 제가 빠지지 않고 갔는데 검사의 신문조서, 피신조서는 항상 문형배 소장대행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했느냐, 변호사가 입회했느냐 하면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중에서 내란특검법 2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2년 동안 45건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무려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서 무려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에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타령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내란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장관, 이것만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행하지 않고 내란대행이라는 말을 들을까 의심을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지요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미르재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혹시 수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느냐 하면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보니까, 과연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느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느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안종범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겉습니다.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요.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처장님,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수처에 고소가, 고발이 들어와 있는 거는 맞고 지금……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살아남아서 그 후에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 원을 강요해서 강요 모금하고, 이렇게 뜯어 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대행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대통령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 송석준 위원 저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상목 몸조심해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대 야당의 대표님께서 또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법률가가……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일선 행정기관의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이분을 문제 지적하는 게 마흔혁현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냉철하게,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국민 누구나가 대통령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사법부는……

○ 송석준 위원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석준 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씀 하지 마시고.

법무부장관대행님, 지금 국민들께서 누구나 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절전제로 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송석준 위원 직무유기죄가 성립돼도 그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헌법에 나오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현직으로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지금 뭔가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국무총리 역할도 대행하면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모든 권한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같지요? 대통령으로서 왜 예우를 안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님, 지금 탄핵소추 중에 있고 직무정지 중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감사원장님을 오랫동안 뮤어 놔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시는 국무총리를 직무정지시켜 놔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안공항 참사, 공군기 오폭 사고, 심지어 드론기가 헬기를 충돌해서 사고 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 탄핵…… 지금 뭐 이번 주에 탄핵 인용될 거라고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좋아하시던 분들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어두워지셨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궐위 중에 우리 한덕수, 그야말로 대미 통상 전문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경제 시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잘 통할 수 있는 이분을 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하나하나 가……

무슨 국무위원으로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건의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지요. 5개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엮어서 직무정지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으로 했어요, 우리 정수의 과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의 정수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재명 대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거대 야당 대표의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를 정중하게 권해 드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헌법재판소장님만 있으면 내가 그분한테 지금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왔으니까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하신 우리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한번 소회를, 답답하신 국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헌법적인 쟁점들, 헌법재판소에서 치밀하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합리적인 순리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야지요.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은 질문하는 분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지면 그다음부터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저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 발언권은 본인 위원 거지요, 위원장님 게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켜져 있는 동안만 본인 겁니다.

○**송석준 위원** 답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도 그 시간 안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임의로 해석하셔서 운영하시면 아주 불공정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장님, 지금 이 경호처 내부 문건 보셨지요? 12월 12일 자로 생산된 보고 문건이고요. 12월 7일 지시사항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장경태 위원** 형법 155조 증거 인멸 소지 아닙니까, 공수처장님? 명백한 사유 아닙니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 문건은 보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내란행위가 성립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 증거가 비화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1월 19일, 1월 31일, 2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조직적이고 아주 기술적으로 법 기술자처럼 이 증거가 채택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실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화폰이 실제 로그아웃 상태이고 로그아웃하면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검찰은 여인형 조사했을 때부터 비화폰 서버가 삭제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수사하면 안 되지요.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가 검찰 비화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 및 서버 기록을……. 자연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좀 추가해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질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배당 어떻게 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경태 위원** 배당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하튼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경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빨리 배당해 주셨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연락하고 경찰에도 연락하고 심지어 대법원에도 연락해서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하는데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포고령 위반 특수본 그 기획서 있을 겁니다. 몇 명 검사를 찍어 가지고 정치인들 어떻게 강제 구금하고 연행하고 기소해서 군사법정에 세울 건지 다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서버 기록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꼭 수사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님, 국무회의에서 ‘현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발언 하신 적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상당한 기간 내에 따르면 되는 거라고……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는 말씀 하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장경태 위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현재 결정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결정 안 따라도 됩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안 따라도 되는 건 아니고요.

○장경태 위원 언제까지 시한을 정합니까, 그러면?

○법제처장 이완규 상당한 기간은……

○장경태 위원 상당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법제처장이 그걸 결정합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그것은……

○장경태 위원 재판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결정하겠지요.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재량적인 판단 할 권리 있는 있으니까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명권자가 1년이고 2년이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장경태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경태 위원 본인 변명은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시고요. 저는 이 발언을……

○법제처장 이완규 답변을……

○장경태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했나 안 했나 저는 그것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답변이 겁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그리고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또 ‘주석 형사소송법’ 제5판에 집필했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에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이 사흘간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하고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 구속취소 판결의 후반부를 더 보세요.

○장경태 위원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전체를 다 보시면……

○장경태 위원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아니, 그것만 가지고 즉시하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날짜로 계산이 돼야 됩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지금……

○**장경태 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법원의 1심이,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검찰이 즉시하고 해서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았어야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그 판단 내용이 지금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날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구속기간에 대해서?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지금은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되겠지요, 이제.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의견을…… 대한민국의 법제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장 아니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적인 기관으로서……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찰도 다 시간으로 해야겠네요. 일단 2017년에는 날짜였는데 소신이 바뀌신 건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내가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 그래서 법제처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고요. 법제처장 입장이 있을 수 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지금 말하면 법제처의 의견이 되잖아요.

○**장경태 위원**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재판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관장으로서 얘기하시는……

○**법제처장 이완규** 됐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하시든 말든 그것도 자유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저작물이었다고.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법제처장으로서 법 해석을 하시는 기관장이시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리고 지금 그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 즉시하고 또는 항고를 논하려면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법제처장 이완규** 결정문 전체를 보시면……

○**장경태 위원**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해석 기관장 아니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그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에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그것은 항고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날짜로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소신이 없어진 건가요? 2017년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주석 책을 잘못 쓴 거네요?

○법제처장 이완규 이미 대답한 것으로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때는 날짜라고 하셨는데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요, 지금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2017년도에 학문적으로 쓴 것이고 지금 저는 법제처장이라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요.

○장경태 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해석 기관장 아니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지금 당장 법원의 현안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장경태 위원 본인이 무슨 감사원장입니까, 현재 사무처장입니까? 법제처장이잖아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려 주셔야지요, 법제처장으로서. 방통위원도 임명하는 데 그것 지연시키신 분이 법제처장 아니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그것을 논하시려면 구속취소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

○장경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장경태 위원님……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장경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제가 장경태 위원 옆에서 법제처장님이나 공수처장님 말씀을 듣고 있어보니까, 위원들의 질문이 위원들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속 ‘질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느냐’ 또는 심지어 막 위원을 겁박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 주시고요.

국민들께 이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란이 수습되지 않고 내란이 진행 중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무위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정청래 위원장 계실 때 하시지.

(웃음소리)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님, 실무가로서 책자를 쓸 때의 입장과—아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듣기에 거슬렸습니다—법제처장으로서의 입장이 다르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에.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유상범 위원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가만있어 봐요,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나왔을 때 개인 이완규로서 답변했습니까? 법제처의 입장이 된다는 얘기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제처……

○위원장대리 박범계 저도 화가 나면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좀!

○법제처장 이완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쓴 책자의 입장과 현재 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구속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에 구속취소에 대한 장경태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제처장으로서의 입장과 실무가로서 그 책을 쓸 때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지금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요. 아까 답변 태도를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동영상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아마 처음 말 걸었을 거예요. 답변 태도가 그게 됩니까, 진짜?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분명히……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만해요, 이제!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답변을 강요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범계 앞뒤가 다르잖아요, 일관되지 않고.

○유상범 위원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 정도 하고……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마치 국민을 무시한다는 듯 이런 식의 말, 태도는 적절치 않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검찰도 날로 한다고 했는데 뭘 답을 못 해요?

○유상범 위원 그만해요, 그만해.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이 말도 못 하는 게, 자기가 쓴 책을…… 이런 책을 쓰지를 말든가 말도 못 하잖아요.

○서영교 위원 즉시 항고도 못 하는 검찰도 날로 한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답을 못 해요 그것을? 기회주의적이지.

○위원장대리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났고 그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려고 했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그것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그때 법원의 입장은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위헌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법은 일반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기를 하든지 간에 그 조항의 위헌성은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든 아니면 석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든 그 조항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만 내려지는 것이지, 현재 재판소가 이런 경우에는 합헌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헌일 수 있다라고 법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석방했으니까 즉시항고 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 봤어야지 석방해 놓고도 왜 즉시항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나 석방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든지, 저는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헌성이 있다는 전제가 맞다면 그건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위원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예를 들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회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저는 결정문 그대로 읽습니다—그다음에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폐쇄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도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렇게 모든 탄핵 사유들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지를 조금 되짚어 본다면,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조은석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하자 마자 대통령실 감사했던 것 관련해서 직권 재심의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감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재심의를 지시하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검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었던 김인회 직무대행도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직무정지되기 전에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을 했더니 그것을 다시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탄핵이 안 될 게 뻔하고 이렇게 현재에 가서 전부 다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사원장님에 대해 감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저는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누가 직무대행을 순차로 하게 될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직무대행을 순차로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직무대행님, 검사를 탄핵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수사 재량을 남용한 게 없다라고 결정 났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관저로 가서 조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 났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동혁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마용주 대법관 그다음에 마온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하느냐, 최상목 대행에게 좀 건의하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에서 지금 위헌 결정까지도 났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는 현재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박희승 위원 건의드렸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드렸습니다.

○박희승 위원 건의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승 위원 건의는 드린 것 확실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건의드렸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박희승 위원 최상목 대행이 금방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이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486억 원을, 강요에 의한 불법 모금의 거의 공동정범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소시효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최상목 대행이 무슨 약점 잡혀 가지고 지금 꼼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요?

공수처장님,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희승 위원 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진행형이고 현실인데 현재에서 현재 재판관 구성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금방 486억 정도의 불법 모금의 공동정범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에 관한 위원님의 그 언급에 대해서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관련된 사건 지금 수사 중이므로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어됩니다.

○**박희승 위원**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당 기간은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내란당을 편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도 지금 교도소 갈 처지잖아요, 사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김석우 차관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는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또 재판관 퇴근 차량을 향해서 ‘현재 박살’ 외치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여야 한다’, 막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로서는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주문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이런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해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서부지법 재판에서도,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이다’, ‘불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다’, ‘검찰의 소설’ 등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당당하게 법정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법 절차가 있는 이상 그 사법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갈라져 있는데 석방되면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지지자에 대한 감사,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승복을 시사했습니다. 정작 그 당사자인 윤석열은 현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지금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현재 결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박희승 위원** 아니, 지금 이런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것은……

○**박희승 위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아마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감사원장님, 지금 너무 억울하게 탄핵소추돼서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탄핵이 기각돼서 이제 감사원장님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이고 그중의 13건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애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첫 번째 띾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좋다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동의합니다’, 잘못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동영상 틀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상자료 상영)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직무유기입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직무유기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좀……

○**조배숙 위원**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국민한테 이게 범죄로 확정되지

도 않았는데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 범죄행위를 사주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협박을 합니다, 몸 조심하라고.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대선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야당 대표면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입니다. 어디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지금 98일 동안 업무 정지됐는데 그사이에 감사원 내에서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십니까?

조은석 감사원장직무대행은 지난번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종결했는데 이것을 직권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본인이 그만두는 날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은 이것이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직권 재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권 재심의는 이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결과에 명백한 오류나 위법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대행을 인계받은 김인회 대행 그 사람이 백재명 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백재명 위원을 올해 1월 18일 자로 미리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됐으니까 발령도 무효다. 당신의 임명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켜 놓고 대통령실 관사 이전 감사 직권 재심의하고 또 후임으로 임명된 백재명 위원 흔들고, 그렇게 내부에서 감사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5일 날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1월 17일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안을 처리했어요.

이것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림에서 감사원의 업무 정지시켜 놓고 지금 협업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흔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공격하고 감사원의 대행하시는 분들이 국회하고 완전히 팀플레이를 한 겁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이것은 손발이 착착 맞아서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탄핵이 진정한 위법이 있어서 한 탄핵이냐?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탄핵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최재해 감사원장님, 지금 감사원장이 공백이 돼 있었던 건 맞고, 그러면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감사원장 최재해 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지난번 사실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와 관련된—감사원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얘기예요—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탄핵소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으로 소추안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확인하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위원장대리 박범계 최재해 감사원장이 없다고 해서……

- 지금 빼면 나머지 여섯 분이지요?
-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의 감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저 감사 의안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 감사원장 최재해 어떤 감사……
- 위원장대리 박범계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한. 저게 대행 혼자서……
- 조배숙 위원 그랬다고 합니다.
-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듣기로는 대행 혼자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렇습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예,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현재 그러면 그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지금 그것은 이미 처리가 됐다고 완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그 완료된 법적 수위는 어떤 거예요?
- 감사원장 최재해 법적……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렇지요? 지금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저 의안을 처리한 수위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대행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안 관계는 잘 모르니까 그 법적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럼시다.
-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주진우 위원 법무부차관님,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사위 청문회에서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 그것이 위증으로 최근에 기소됐지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 주진우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주진우 위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또 술마신 시기, 방법,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요. 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앞에서 위증한 것이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 저는 함께 기소된 내용이 더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 시즌에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9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도 기소가 됐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1명이 9000만 원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이름으로 나눠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1명씩으로 따졌을 때 1명당 750만 원에 이르는 고액 후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액 후원일 경우에 과연 받는 쪽에서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통령 수사도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강하게 할 때는 야당 대표 수사에 있어서도 미온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경쟁이 붙어서 이낙연 후보의 후원금이 빨리 차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고 부탁한 결과 90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고액 후원을 한꺼번에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자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적어도 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돈을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고액이 후원되고 한꺼번에 9000만 원을 사실상 김성태 회장이 후원하는 장면인데 김성태 회장이 이후에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그 상황을 당연히 확인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받은 캠프 내에서도 그 돈을 받았으면 고액 후원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만 기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공범은 함께 수사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서는 교부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을 수도 있고……

○**주진우 위원** 지금 수사 중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수수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팀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 상황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주진우 위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수사팀이……

○**주진우 위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역시 같은 시기, 대선 경선후보 시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그것을 대선자금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한 것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별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딥니까? 원칙대로 공범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팀에서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고 현재 남아 있는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팀이 계속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이화영 부지사가 마지막으로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이게 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북한의 고위 관계자한테 고급 품종인 금송하고 주목이라는 나무를 보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상용 고급 나무를 보내 주면서 경기도 남북협

력기금 4억 9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지원했다가는 대북제재 위반이 되니까 마치 인도적 지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가지고 산에다가 묘목을 심는 것처럼 해서 묘목 나무 구입비처럼 지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무더기로 허위 서류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청 내에 있는 평화협력국 전체 직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관여된 직원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많은 내용들을 경기도지사한테, 전혀 모르게 그것도 북한에 가서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 이 큰 건을 아무 보고 없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역시 이 부분의 수사도 뭔가 어떻게 진행되든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제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수사팀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감사원장님, 직무 복귀하셔서 챙기실 거 많으실 텐데 저는 특활비가 민주당 주도로 전액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을 잘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반대 측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서 몇 가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일부 위원님들 질문할 때 답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그래서 억울함이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지가?

○**감사원장 최재해**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간 처리한 업무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식됐다 이런 계기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박균택 위원** 그게 순수하다, 이노센트의 의미는 아니지요? 증거 부족을 뜻하는 거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증거 부족이라니요?

○**박균택 위원** 취지가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에……

○**박균택 위원** 그것 인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한두 가지는 위법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인정된 부분이 국회증감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현재가 얘기를 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현장 검증을 오셨을 때 자료제출 안 했다고……

○**박균택 위원** 다만 그런 죄들이 인정되는데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건 분명히 제가 짚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두 번째, 백재명 감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 박균택 위원** 12월 초에 미리 인사를 해 놨지요, 외상 인사를?
-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 박균택 위원** 1월 18일에 부임했습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아마 그때쯤인 것으로……
- 박균택 위원** 한 달 반 전에 미리 인사를 해 놨습니다. 이런 인사 사례는 참 찾기가 어려운 거지요.
- 감사원장 최재해** 그때 상황이 탄핵소추라고 하는 아주……
- 박균택 위원** 그러면 1월 18일 날, 백재명 감사위원이 임명되는 날 제청권자가 원장님 이었지요?
-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습니다.
- 박균택 위원** 그때 직무정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그 전에 제청을 했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 박균택 위원** 그 전 말고 임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직무정지 중이었지요? 그 인사가 유효합니까?
-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 박균택 위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금년 12월 달에 임명할 후임 감사원장 임명해 놓으면 열 달 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인사 유효하겠네요, 지금 권한이 있었으니까. 인사 일자를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원장님은 모릅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분이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좀 이성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 최재해** 그 임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균택 위원**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은 무효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거예요.
- 감사원장 최재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균택 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고 법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 감사원장 최재해** 한 번 나중에 따져 보시지요.
-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일부 위원들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입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대통령 아닌 거지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 박균택 위원** 직무유기 범죄, 현행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수사를……
- 박균택 위원** 이론상 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든 범죄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박균택 위원** 일반 이론을 묻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현재 결정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에 관한……

○**박균택 위원** 그리고 협행법 체포 불가능합니까? 협행법 체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런 행태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고 그게 처벌 사유가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억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잘못됐다고 처장님도 얘기는 해 주셔야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저희들 경청하고 또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에 지금 최상복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고발장 접수돼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수사 중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수사권도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수사 언제 하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박균택 위원** 경청만 하고 또 두 달, 세 달 그냥 넘기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협행법 체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 소환해서 ‘너 범죄자 맞다. 준법 하라’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경청이 아니라 행동을 하십시오. 저 범죄자들이 지금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런 벼刹한 패륜적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적 행위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하고 있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즉시 행동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지요,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세 번을 반려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검찰에서 세 번 반려한 주된 이유가 결국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거나 또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뿐만 아니고 범죄 사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동안 뭐라고 주장을 해 왔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 대 3으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영장 청구한 거고 검찰도 등 떠밀려서 결국 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결정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구속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이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곽규택 위원** 아니, 검사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철저히 감독하고 하는 게 검사의 제일 첫 번째 임무예요. 그것을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 대 3 결정 난 거 가지고, 그것도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그것에 밀려 가지고 그렇게 영장 청구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법원에서 결정이 있겠지만 영장 기각되면 재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을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수사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차관님, 조직폭력배의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판례 압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 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 가지고 폭처벌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그런 판례가 있습

니다. 왜 그러냐? ‘밤길 조심해라.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다’ 이렇게 했지만 평소의 그 조폭의 행태, 조폭의 전과 이런 걸 봤을 때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 권한대행한테 ‘몸조심해라’ 이런 말 한 게 직무유기의 현행범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협박죄의 현행범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많잖아요. 전과 많고 자기 말 안 듣는 민주당 의원들 7명 날린 것 아닙니까. 평소에 그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몸조심해라,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일단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대한민국 최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한테 몸조심해라, 참 인격도 문제지만 그것 법적으로도 협박죄가 되는 겁니다. 조직폭력배의 밤길 조심해라 판례 꼭 참조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차관님, 지금 홈플러스 사태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것 지금 불완전판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판매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피해자들이 좀 있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곽규택 위원 출국금지 했습니까, 김병주 회장?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수사 사항이라서.

○곽규택 위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또 대규모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속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수사팀에서 염두에 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님,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211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형사소송법 211조……

○서영교 위원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조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따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법……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서영교 위원 읽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1항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현행범인의 요건으로 네 가지 사항……

○서영교 위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읽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211조 2항 1호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흥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 맞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범죄가 될 때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지요?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검찰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비화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화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공직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왜 비화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대상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끼어드는 거지요?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대통령……

○서영교 위원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 부분은 답할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화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공직자가 아니라면 일용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비화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

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곳은, 비화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음리라고 하는 곳에, 정치인·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현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짹싹 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화폰까지 줘 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촉동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뭐니까? 북한의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북에서 들리게 비화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법관,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현백을 3000개 넘게 벌써 구입한 정황 그리고 또 종이관을 1000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모두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인에게 비화폰까지 줘 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의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현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상계엄, 내란, 특히 시신 수습하려고 영현백 3000개를 구입했다는 저 뉴스는.....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차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다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기준에 있는 사람 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탈모 자리에 머리 심듯이 새로 심는 거거든요. 기준에 있던 사람들 다 저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유상범 위원 그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

○유상범 위원 아니, 난 무사……

○위원장 정청래 찐윤이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방어할 생각을 해?

○유상범 위원 전혀 관계없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선동하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정쟁을 벌이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법무부장관대행님, 영현백 계속 물겠습니다.

영현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종이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지금 특수본이 내란 수사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 가지고 오음리로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현백, 종이관을 문의한, 주문한 2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특수본이 수사를 해야 돼요.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것 한번 보세요.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그런데 살인범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국민들은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주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부차관님, 헌법재판관 되고 싶으신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위헌성에 대한 발언을 하신 취지로……

○박은정 위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모든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

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취소를 해 버렸어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계속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입니다, 계속.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뿐더러 직무유기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 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요, 저희 검사 2300명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 있어요, 달력에. 구속기간이 날로 적혀 있지 시간으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지휘권 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했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수본 예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규정에 따라서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대검의 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권은. 즉시항고권은 심우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을……

○박은정 위원 즉시항고권을 심우정이 행사하기 위해서 왜 대검에서 회의를 소집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박은정 위원 박세현 특수본에서 즉시항고권을 행사할지, 구속이 취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대검에서 그것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즉시항고권을 행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우정의 즉시항고권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대검과 특별……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윤석열 이후에 검찰의 업무 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직접 감찰하십시오, 직접 감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 박은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우정 총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박지원 위원** 그리고 특수본에 간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것을 자꾸 변명하면 되나?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고에 삼일장, 오일장이라고 하나요, 72시간장, 120시간장, 뭘로 표현해요? 자기들도 시간으로 내놓고 바로 대검에서도 날짜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차관이 돼 가지고 말이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그 부분은.....

○**박지원 위원** 그것은 차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감사원장님, 아까 복귀 인사를 하면서 현재에서 잘못이 없어서 복귀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박지원 위원** 똑똑히 말해 봐요!

○**감사원장 최재해** 일부 잘못된.....

○**박지원 위원** 어떤 재주가 있어서 문재인, 윤석열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3대 정권의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감사원장도 최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표적감사 잘못됐다고 현재에서 인정했지요? 적시했지요?

그다음에.....

○**감사원장 최재해** 그중에 절차적인 부분 하나만 인정을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이것도 적시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자료 요구.....

○**박지원 위원** 관저 감사 잘못됐다고 적시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관저 감사는 그렇게 적시 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복귀했으니까 잘하겠다, 이것 하지.....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까 그 원안을 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박지원 위원** 그리고 임기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에 넘어갈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내란수괴는 과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있으면 또 다른 정권의 감사원장하면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되겠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사실 저도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발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저하고도 잘 알았잖아요. 사람이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고.

○**감사원장 최재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바뀐 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 검찰총장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최상목 대행,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수금사원 한 것, 478억 관계 공소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수사할 거예요, 안 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경청하며 들었고 또 그런 부분……

○**박지원 위원** 그런데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 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 주잖아요.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마음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 오는 일은 수사로 보여 드렸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역할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엄연하게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영장 담당 법관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잘 처리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천대엽 처장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항고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석방지휘부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언론 보도에서는 몇 차례 있다고 제가……

○박범계 위원 아니요아니요, 그것은 다른 케이스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가요?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마는……

○박범계 위원 차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부 확인해 본 바로는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한 사례는 실무상 없는 것으로, 한정된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처장님, 즉시항고포기서 없이 법원이 언론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구나, 우리 법원은 앞으로 검사들이 혹은 경찰이, 공수처가……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소송행위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언론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로 법원을 기속하는 소송행위로 판단할 생각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박범계 위원 오늘 제가 보니까, 처장님의 지난번에 참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울림도 컸고. 오늘 보니까 조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유감입니다. 소송행위 없이, 서면에 의한 행위 없이 심우정이 뭐라고 하고 박세현이 뭐라고 하고 저기 있는 김석우 차관이 뭐라고 하고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흔혁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27일 날 났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에요. 국무회의만 세 번을 했습니다.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상당 기간 임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차관, 현재의 결정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기속이 장난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따라야 됩니다.

○박범계 위원 따라야 되지요? 국가기관이 따라야 될 복종의무를, 수인의무를 명령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단입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의 국무회의를 지나갔는데 또 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두 번씩이나 마흔혁 임명해라라고 삼부요인 중의 한 분이 또 청구인이 요구를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야 될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이행하면 되지 뭐. 내 멋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그(dog)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12·3 내란의 원인이에요. 제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흔혁 재판판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 자 결정을 세 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

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탄핵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부분은.....

○박범계 위원 3주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따라야 되지요, 쳐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박범계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님, 3주간의.....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박범계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 수사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하신 위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삼가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마이크가 꺼졌지만, 명태균 씨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한 게 있어요. 동생 계시지요, 동생? '오동운 너무 믿지 마라', 동생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범계 위원 그런 오해 받지 않으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돼요.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 때문에 4년째 재판받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 말씀인데.....

○박범계 위원 그거나 저거나 똑같지요, 뭘. 웃지 마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재판받아 봤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사건입니까?

○박범계 위원 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 질이 다릅니까?

○박범계 위원 비교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내용이 확 달라요, 아주 달라.

○위원장 정청래 내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한동안 비밀요원이 공항을 점거했다, 뭐 한다 하면서 내란 선동을 하고 총알을 몇만 발 가지고 왔다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영현백까지 나오네요. 저한테까지 혹시 모른다고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까지 해 주시는데, 이미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8년 중기계획에 따라서 합참에서 영현백 신규 비축품목 선정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구입했고 조달량이 증가해서 2024년 12월 11일 날 납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납품이 됐다 했더니 느닷없이 이게 둔갑이 돼 가지고요 비상계엄하에 체포되는 사람을 사살한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이것도 병 아니겠나 싶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3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민의 뜻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한 것을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합헌적이고 시장경제에 맞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거부권 행사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차관은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 의견 낼 때 어떤 의견을 냈어요?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내셨지요, 장관이 안 계시는 동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의 취지, 본질 등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유상범 위원 특검법도 냈지만 그 외에 일반 다른 법률 많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다른 법률도 일부는 관여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히 불법파업 조장법 같은 것은 불법으로 파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계 시장경제에 맞는 법입니까? 이런 법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포기하는 것 아니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어야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이 놓후하더라도 사전적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적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 제도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이 계시는 동안 거부권 행사 의견을 여러 가지로 법무부에서 냈을 텐데 거기서 부당한 또는 민주당이 비난하는 그런 취지의 전혀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재의 요구 행사에는 거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면 이쪽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

키고 나서 비난을 해야지요.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 같은 것 이것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양곡관리법 그것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두 배 더 쌀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을 던져 놓고 그것을 재의 요구하면 재의 요구했다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참 정쟁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모습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 금감원장이 정무위에 출석을 해서 삼부토건 조사 대상자에는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 하면 추가조작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관련자로서는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장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거예요. 그거 맞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삼부토건에 의혹을 가지고 특검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사실관계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사하라 이런 특검법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그냥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법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권위가 사라지고 정쟁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를 쓰러트리기 위한 모든 것에 법안이 맞춰져 있는 현실 옆에 앉아 계시는 정부위원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현장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안 타까울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장관대행님, 1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12월 3일.....

○위원장 정청래 아, 12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10시 23분부터 국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봤음직한 단어가 뭐 같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때부터는 계엄과 관련된 그런 검색.....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계엄령, 계엄 선포 이런 거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많은 국민들은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마 그때쯤부터 계

엄에 관한 검색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것을 검색해 봤다면 2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을 해 봤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갑자기 10시 23분 전 8시 20분경에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해산 이런 것을 검색해 봤다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물론 가정법이기는 한데 갑자기 뜯끔없이 머릿속에 비상계엄 생각도 없는데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것을 검색해 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일반적으로든 이반적으로든 삼반적으로든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2시간 전 8시 20분쯤에 비상계엄,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것을 검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챗GPT에.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지 못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8시 20분에 이미 챗GPT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것을 챗GPT에 검색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느냐면 ‘포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님, 일반인이 비화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인은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노상원은 일반인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비화폰을 수거한 경위는 확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반인이 비화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 가질 수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경위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경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검찰에서 왜 세 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비화폰 관련 서버 증거 인멸 또 검찰과 내통해서 선관위에 무슨 과장이 가네 마네, 새벽 3시에 안부전화 하는 사람 있어요?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안부전화 했습니다’, 세상에 새벽 3시에 안부전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막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되고 비화폰의 비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인)

| 성명 | 직업 | 사유 | 신청 교섭단체 |
|-----|----|---------------------------------|---------|
| 명태균 | |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수사 및 의혹 등 관련 질의 | 더불어민주당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태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감사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이완규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춘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 법원총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0)

이상 3건 3월 11일 회부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3. 11.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4)

이상 4건 3월 12일 회부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6)

이상 4건 3월 13일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7)

이상 2건 3월 14일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3. 14.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2)

이상 5건 3월 17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 행정입법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소관부처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35371호 | 2025. 3. 11. | 법무부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제1093호 | 2025. 3. 18. | |